

한궁 진흥에 관한 법률안 (박수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739
----------	-------

발의연월일 : 2026. 2. 11.

발 의 자 : 박수현 · 조인철 · 어기구
서삼석 · 윤준병 · 윤후덕
안호영 · 이개호 · 문진석
양부남 · 김원이 · 정태호
양문석 의원(13인)

제안이유

한궁(韓弓)은 우리의 전통무예인 국궁(國弓), 전통놀이인 투호(投壺)와 현대 스포츠인 양궁을 정보기술로 융합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생활형 스포츠임.

한궁은 신체적 제약이 적어 노인 · 장애인 등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고, 고령화 시대에 모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생활체육임.

또한,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한궁의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생활체육 종목으로 육성하여 한류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이에 한궁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한궁 진흥 기본계획, 연구 · 개발의 지원,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 등 한궁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나아가 한궁의 세계화에 기

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한궁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체력 증진과 건강한 정신을 함양하며 한궁의 세계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궁의 체계적인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한궁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 진흥을 위한 한궁지도자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학교의 학생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체육활동과 연계된 한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인·장애인의 한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인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과 한궁 프로그램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궁 진흥을 위하여 연구·개발, 한궁단체·한궁시설, 국제교류·해외확산, 국제기구의 유치 및 국제경기대회의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바. 한궁지도자와 한궁 관련 종사자 등은 한궁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궁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한궁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무예인 국궁, 전통놀이인 투호와 현대 스포츠인 양궁을 접목한 한궁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체력 증진과 건강한 정신을 함양하며 한궁의 세계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궁(韓弓)”이란 대한민국의 전통 가치와 현대 정보기술이 융합된 생활체육 종목으로 안전이 확보된 핀을 표적판에 왼손과 오른손 각 5회씩 스트레칭 방식으로 투구하여 득점을 겨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스포츠를 말한다.
2. “한궁지도자”란 한궁의 보급·교육, 경기 운영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한궁협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자격을 부여받거나,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3. “한궁시설”이란 제11조에 따른 경기장을 포함한 한궁의 교육·경기·연습에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4. “한궁단체”란 한궁의 진흥·보급·교육·국제교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적인 협회·연맹과 그 산하 기구 및 관련 법인·단체

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궁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한궁 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한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궁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궁의 체계적인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한궁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궁 진흥의 기본방향
2. 한궁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한궁의 전승을 위한 교육·보급에 관한 사항
4. 한궁지도자 및 한궁선수의 교육·양성에 관한 사항
5. 한궁시설 및 한궁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한궁 대회 및 스포츠클럽·동호인조직 등의 지원
7. 한궁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에 관한 사항
8. 한궁의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

9. 한궁 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10. 한궁시설 및 한궁 관련 행사의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한궁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한궁지도자의 양성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궁 진흥을 위한 한궁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한궁지도자의 종류, 등급, 자격기준, 연수, 검정 및 자격부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궁 진흥에 필요한 경기 및 방송, 연구 등 한궁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한궁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한궁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한궁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학생 및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일반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체육활동과 연계된 한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장은 체육활동과 연계된 한궁 프로그램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단체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체육계열학과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활동과 연계된 한궁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노인복지시설 등과의 연계 지원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노인·장애인의 한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과 한궁 프로그램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의 치매예방을 위하여 한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한궁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연구·개발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궁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서비스의 개선을 장려하고 한궁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궁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효과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협동 연구·개발을 촉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협동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협동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한궁단체 및 한궁시설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궁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궁단체와 한궁시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궁경기에 전용할 수 있는 경기장을 포함한 한궁시설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제12조(국제교류 및 해외확산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궁

의 국제교류와 해외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대회의 개최, 한궁 지도자의 파견, 해외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국제기구의 유치 지원) ① 국가는 외국 정부·단체 등과 국제협력에 관한 정보교환, 공동 조사·연구 및 행사 개최 등 한궁과 관련된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한궁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제기구 유치 조직위원회를 둔다.

③ 국가는 개발도상국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에 한궁전문가를 파견하거나 한궁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궁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유치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한궁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국제경기대회의 개최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궁과 관련된 국제경기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국제경기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비용이 지원되는 국제경기대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한궁협회) ① 한궁지도자와 한궁 관련 종사자 등은 한궁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궁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한궁의 보급·교육

2. 한궁 경기 운영의 지도

3. 한궁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한궁 관련 경기 규정의 제정·개정

5. 한궁 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

6. 한궁지도자 및 한궁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한궁 진흥을 위한 사업

7. 한궁지도자의 자격 부여

8. 그 밖에 한궁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그 밖에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궁지도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궁 관련 심판 등 지도자는 제6조에 따라 자격을 부여받은 한궁지도자로 본다.

제3조(한궁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한궁협회(이하 “대한한궁협회”라 한다)는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 본다. 이 경우 대한한궁협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적합하도록 정관 등을 변경하여야 한다.